

## 『대전시청년희망통장』 특약

### 제 1 조 적용범위

『대전시청년희망통장』 (이하 "이 예금"이라 함)의 거래에는 이 특약 외에 『예금거래기본약관』, 『적립식 예금 약관』, 및 대전광역시 청년기본조례에 근거한 대전광역시 '청년희망통장 사업 운영지침' (이하 "운영 지침"이라 함)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.

### 제 2 조 가입대상

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"운영 지침"에 따라 위탁기관에서 은행에 가입 승인을 통보한 실명의 개인(이하 "고객"이라 함) 및 위탁기관을 대상으로 합니다. (단, 고객은 1인 1계좌 가능합니다)

### 제 3 조 예금종류

이 예금의 예금종류는 적립식예금으로 합니다.

### 제 4 조 약정기간

이 예금의 약정기간은 고객은 36개월, 위탁기관은 60개월로 합니다.

### 제 5 조 가입금액

이 예금의 가입금액은 고객은 15만원으로 신규하고, 위탁기관은 0원 이상 원단위로 신규합니다.

### 제 6 조 적립한도

- ① 고객은 매월 가입금액(15만원)으로만 적립 할 수 있습니다.
- ② 위탁기관은 제한 없이 자유롭게 적립 할 수 있습니다.

### 제 7 조 이자지급

- ① 이 예금의 만기해지 시 은행은 각 불입금마다 입금일부터 만기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가입일 당시 고시한 기본 금리에 우대금리를 더하여 셈한 이자와 원금을 지급합니다.
- ② 이 예금의 중도해지 시 은행은 각 불입금마다 입금일부터 지급일 전날까지 기간에 대하여 가입일 당시 고시한 중도 해지금리로 셈한 이자와 원금을 지급합니다.
- ③ 고객이 만기일 이후 예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, 은행은 만기일부터 만기 후 1개월까지는 지급일 당시 고시된 3년 제 정기적금 약정금리의 1/2 금리를, 그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는 지급일 당시 고시된 3년제 정기적금 약정금리의 1/4을 적용하여 셈한 이자와 원금을 지급합니다. 이 경우 제 8 조의 우대금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.

## 제 8 조 우대금리

- ① 이 예금 가입 후 다음 각 호의 거래실적이 있는 경우, 은행은 고객이 가입한 예금에 대하여 최대 연 0.8%의 우대금리를 가입일 당시 고시한 기본 금리에 더하여 지급합니다.
  - 가. 이 예금 가입 후 3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고객이 지정한 날에 고객 명의의 KEB하나은행 입출금 계좌에 타인으로부터 50만원 이상 급여 이체된 경우 (연 0.5%)
  - 나. 이 예금 가입 후 3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당행 결제계좌를 통해 하나카드 (체크,신용)카드 결제 실적이 있는 경우 (연 0.1%)
  - 다. 이 예금 가입 후 3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보유하고 있거나 고객 명의의 KEB하나은행 입출금 통장을 통하여 2건 이상의 자동이체(공과금, 관리비, 통신료, 보험료 등) 거래를 한 경우 (연0.1%)
  - 라. 만기까지 30회 이상 납입한 경우 (연0.1%)
- ② 제1항의 우대금리는 고객명의 계좌에 대해서만 적용하며 위탁기관 명의의 계좌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.
- ③ 제1항의 우대금리는 만기해지 시에 적용하며, 중도해지 시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.

## 제 9 조 분할해지

이 예금은 분할해지가 불가 합니다.

## 제 10 조 해지방법

- ① 고객은 “운영지침”에 명시한 기관에 대전시청년희망통장 해지신청을 하고, 위탁기관이 “운영지침”의 해지 사유에 따라 은행에 해지 승인 통보를 한 경우에 한하여 이 예금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
- ② 시지원금은 위탁기관에서 해지 요청시 “운영지침”의 요건에 따라 해지합니다.

## 제 11 조 특별중도해지

“운영지침”에 따라 위탁기관이 은행에 특별중도해지로 통보한 경우 이 예금 가입일의 기본 금리를 적용합니다.

## 제 12 조 양도 및 담보제공의 제한

이 예금은 양도 및 담보제공이 불가능합니다.

## 제 13 조 부가서비스

고객이 KEB하나은행 입출금통장에서 이 예금계좌로 매월 자동이체를 통하여 불입금을 입금하는 경우, 은행은 익월 첫 영업일부터 다음 각 호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매월 총 10회씩 면제합니다. 단, 은행은 가입일 및 그 익월까지는 자동이체 여부와 관계 없이 매월 총합 10회씩 수수료를 면제합니다.

- 1) 전자금융(자동화기기, 폰뱅킹, 인터넷뱅킹, 스마트폰뱅킹) 을 통한 타행 이체거래
- 2) 당행 자동화기기를 통한 마감 후 현금인출 거래

## 제 14 조 기타

시지원금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“운영 지침”이 적용됩니다.

※ 이 약관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.